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20. 3.

순서

<고용노동부>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
2. 사업개발비 지원	3
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5
4.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7
5.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9
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11
7.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13
8. 모태펀드	15

<중소벤처기업부>

9.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7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20
11. 소셜벤처 육성	22
12. 소셜임팩트 펀드	24
13.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14.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8
1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30
16. 예비창업패키지	32

순서

<문화체육관광부>

17.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34
18. 토요문화학교 운영	36
19.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37
20.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9
21. 스포츠클럽 육성	41
22. 관광두레 조성	43

<산업통상자원부>

23.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46
24.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50
2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54
26.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57
27.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59

<보건복지부>

28.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61
29.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64
30.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67
3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71

순 서

<교육부>

- 3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73
- 33.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75
- 34.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77
- 3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79

<행정안전부>

- 36. 마을기업 육성 81
- 3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3
- 3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85
- 39.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87

<국토교통부>

- 40.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 89
- 41.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91
- 42.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93

<농림축산식품부>

- 43.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96
- 44.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98
- 45.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100

순 서

<산림청>

- 46.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103
- 47.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105
- 48.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107

<금융위원회>

- 49.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109
- 50.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110
- 51.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111

<기획재정부 등>

- 52. 협동조합 활성화 113
- 5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115
- 54.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118
- 5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121
- 56. 어촌뉴딜 300 122

[참고]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활용 관련 개선 현황 ... 124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 사업규모 : '20년 91,919백만원

2. 지원대상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
 - * '20년 1인당 월 1,974천원 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료) 예비 50%, 인증 40% (취약계층 +20%) 지원, 기업당 최대 50인 이내
- 지원규모 : 8,185명

4.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0.1월 ~ 2월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20.2월 ~ 3월
수업수행 및 정산	사업참여기업	'20.12월

* 구체적 일정은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8

2 사업개발비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업규모 : '20년 20,28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사업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지원

구분	연간지원한도	최대 지원한도	지원항목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3억원 (인증, 예비 등 포함)	브랜드·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 (지원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 3억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매칭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지원규모 : 1,137개소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0.1월 ~ 2월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20.2월 ~ 3월
사업수행 및 정산	사업참여기업	'20.12월

* 구체적 일정은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8

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全过程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규모 : '20년 29,218백만원

2.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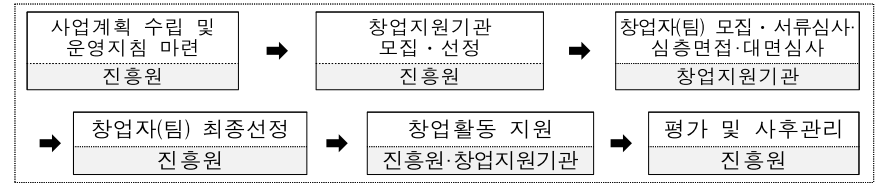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2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3인 이상으로 구성,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3.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교육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개발, 상품화개발, 홍보·마케팅, 기자재구입 등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1~5천만원, 830개팀)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멘토링)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 경영관리·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전문 멘토링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 추진체계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지원기관 모집·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11월~'20.1월
창업팀 모집·교육	창업지원기관	'20.1월~2월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월
창업지원·인큐베이팅	창업지원기관	'20.2월~12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5

4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순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규모 : '20년 2,366백만원

2.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가능한 사업모델로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2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 지역 주민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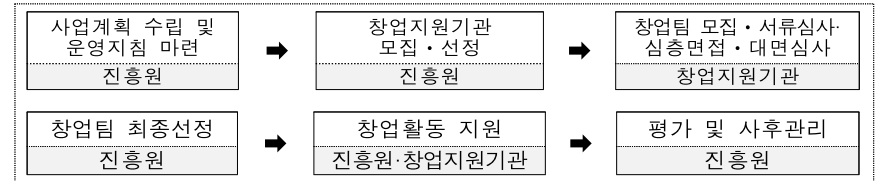
** (국도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문화체육관광부) 주민여행사 등

3.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 역량강화 및 사업화, 현장밀착 멘토링, 사업화 기반구축, 창업자금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제공
 - (창업팀 역량강화 및 사업화) 교육 및 팀빌딩(조직화) 지원, 지역 기반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발 및 실행역량 축적, 자원 연계 등
 - (현장밀착 멘토링) 상시 운영을 지원하는 담임멘토링, 사업화 등 전문성을 지원하는 전문멘토링

- (사업화 기반구축)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책 자원 등을 연계하여 해당 창업팀의 실질적인 사업기회 확보 등 사업화 기반구축
- (창업자금)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운영비 등 지원(70개팀)

□ 추진체계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지원기관 모집·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월~3월
창업팀 모집	창업지원기관	'20.3월~4월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5월
창업지원·인큐베이팅	창업지원기관	'20.5월~12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팀	031-697-7782

5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초기 창업기업에게 입주·협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창업의 지속성장 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률 제고

사업규모 : '20년 3,081백만원

2.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공팀

3.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협업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편의시설,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
 - (프로그램)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 경영·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멘토링 연계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 (협업지원) 입주기업간 상호교류 지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규모 : 성장지원센터 기존 10개소 + '20년 3개소 신규조성 (1개소당 50개 창업팀 입주)

<성장지원센터(10개소)>

지역	소재지	연락처
서울1센터	서울시 성동구	02-467-2510
서울2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02-3667-8407
경기센터	성남시 수정구	031-757-2501
강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033-748-8661
대전센터	대전시 서구	042-489-5790
전북센터	전주시 완산구	063-223-2503
광주센터	광주시 광산구	062-946-2166
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053-431-9821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052-276-2505
부산센터	부산시 수영구	051-753-2501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성장지원센터 입지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3월
성장지원센터 조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4월~11월
성장지원센터 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8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031-697-7763

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상품 판매,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사업규모 : '20년 50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상품물)** 전국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유형별·지역별·인증별·사회적가치 정보 제공 등
 - **(규모)** 17,540개 상품, 888개 기업('19년말 기준)
 - **(구성)** 베스트관(우수 판매 상품, 추천상품), 인증상품관(우선·의무 인증 상품), 팔도기업관(지역별 기업 정보 및 지역쇼핑몰 연계) 등으로 구성
 - **(공공구매 활성화)** 후불결제, 건적결제(대량구매 지원), 구매패턴을 반영한 상품 추천, 상품별 지역·우선구매·의무구매·사회적가치 정보 제공
 - **(콘텐츠 공유)** 지역의 사회적경제 쇼핑몰, 사회적경제 소셜벤더 등을 대상으로 상품 콘텐츠 및 운영전반 공유
 - **(폐쇄물 등 연동)**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용하는 폐쇄물* 등과 연동
 - * 공무원연금공단 사내복지몰과 연동

-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조달 정보 제공(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 운영 병행)
- (판로지원 정보 관리)** 정부·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각종 판로지원사업 정보 제공,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 등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홍보마케팅 업체 선정·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월 ~ 12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선정·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3월 ~ 12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2

7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사업규모 : 비예산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9년 실적제출 대상 842개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우선구매 범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등 제출 및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

- (구매실적 관련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선구매 실적 반영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기재부, '10년부터 평가),
 ②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안부, '11년부터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포함),
 ③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안부, '13년부터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포함)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 취합(~2월말) 및 공고(4월말, 고용부 홈페이지)

* '18년 구매실적 1조 595억원(총 구매액의 2.27%)

'19년 구매계획 1조 1,631억원(총 구매액의 2.51%)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9년 구매실적 및 '20년 계획 취합	고용노동부	'20.1월~2월
실적 취합·정리	고용노동부	'20.1월~4월
공고	고용노동부	'20.4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4

8 모태펀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규모 : '20년 60억원 규모

- * '11년 조성된 제1호 투자조합의 회수금액(40억원)을 활용하여 '20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출자금액	175	25	25	25	25	75
출자년도	-	'11년	'12년	'13년	'14년	'18년

2.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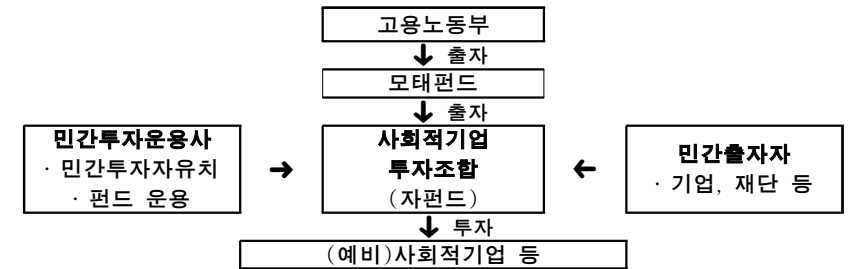
- 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운용기관) (주)한국벤처투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05.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모태펀드 관리·운영

- (추진체계)



- 지원규모 : '19년말 기준 총 5개 조합 결성(총 290억원), 사회적기업 등에 총 203억원 투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투자운용사 모집 공모	(주)한국벤처투자	'20.2월 출자사업 공고
투자운용사 선정	(주)한국벤처투자	~'20.4월
민간출자자 모집 및 투자조합 결성	투자운용사	투자운용사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031-697-7846

9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사업규모 : '20년 20,714백만원

2.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²⁾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조합

구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선도형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 → 지방자치단체

3. 사업내용

-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유형	지원한도/비율		전체 한도
	일반(80%) (브랜드, 마케팅, 개발 등)	장비(70%)	
일반형	1억원	1억원	2억원
선도형	5억원		5억원

- (협업아카데미) 신규 협동조합 발육을 위한 인큐베이팅, 既설립 협동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통	상담	일반상담: 아카데미 이용 및 지원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등(상시)
		전문상담: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R&D, 갈등해결 등
	교육	찾아오는 교육: 협동조합 설립·경영·해산 기본교육(상시·집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협동조합 기본교육 + 업종별 직무교육
		현장체험교육: 우수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원데이 체험교육
	컨설팅	설립컨설팅: 설립 프로세스 지원
		경영컨설팅: 경영애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해산컨설팅: 조합해산 및 청산관련 프로세스 지원
	인큐베이팅	예비협동조합 대상 교육, 컨설팅, 멘토(선배조합) 매칭 등 원스톱 지원
	연구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연구조직 운영을 지원
네트워킹	지역별 협동조합간 비즈니스(협력) 활성화,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조합 간의 화합·친목도모 교류회	
사후관리	관할지역 내 협동조합 대상 월 1회 방문 사후관리 실시	
자율 프로그램	아카데미별 특화·맞춤형 프로그램 제안·운영	

- (판로지원) 협동조합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판로 채널 확대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 토막광고(제작, 송출), V-커머스 등 온라인 분야의 대중성, 접근성, 편리성을 활용한 마케팅 차별화 지원
오프라인	박람회, 전문전시회,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판매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공동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월 ~ 12월
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아카데미 기관	'20.3월 ~ 12월
판로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3월 ~ 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16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4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사업규모 : '20년 5,682백만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3. 사업내용

협동조합 정책개발

-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조합 운영 간담회, 활성화 기반 구축, 종합관리 시스템 개선, 판로개척 지원 등 협동조합 재도약 정책 인프라 조성

협동조합 역량강화

- 협동조합 운영지도, 종합실태조사 및 평가, 맞춤형 교육, 중기 간 공동·협업모델 연구 및 개발, 조합 컨설팅 등 협동조합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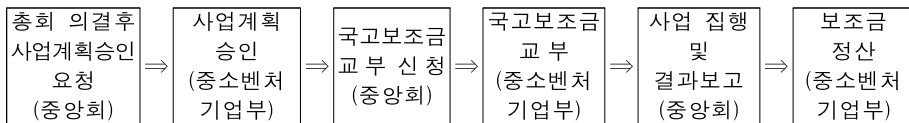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단체표준 종합포털시스템 안정화, 제정컨설팅 지원 등 단체표준 지원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기관(대상)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지원

□ 지원규모

- 협동조합 정책개발(395백만원)
 - 협동조합 제도개선,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판로개척
- 협동조합 역량강화(436백만원)
 -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4,851백만원)
 - 단체표준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4. 추진일정



5. 담당기관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중소기업중앙회	재무팀	02-2124-3031

11 소셜벤처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 사업규모 : '20년 1,711백만원

2.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3. 사업내용

□ 소셜벤처 실태조사

-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공헌(사회적가치)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 소셜벤처 여부 판별, 평가 온라인 신청, 다양한 소셜벤처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소셜벤처 DB, 소셜벤처 맵, 우수 소셜벤처 소개 안내 등

□ 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성수동 일대의 자생적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심화
 - *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등

□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지역 수요와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수도권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수도권(성수동)과 같은 소셜벤처 육성 인프라가 지역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1월
세부사업실행	보조사업자	'20.2월~12월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개별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또는 단체)을 선정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3

12

소셜임팩트 펀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 사업규모 : '20년 35,000백만원 펀드 조성

2. 지원대상

-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3. 사업내용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 (펀드규모) 모태펀드에서 200억원을 출자(60%)하고, 민간자금(40%) 매칭을 통해 35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20년)
- (주목적 투자대상)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선정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소셜임팩트 펀드 개요 >

모태펀드 출자비율	▪ 펀드 결성총액의 60% 이내
투자대상	▪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기간	▪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 4년

<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취약계층 포용 ②불평등 축소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교육/저출산 ②건강과 웰빙 ③고용/일자리 ④주택/주거 ⑤문화 등 ⑥사회적 책임 이행기업(CSR 등)	①공공장소 활용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①수질과 위생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기후변화 ④청정에너지 등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출자사업 공고	한국벤처투자(주)	'20.2.13.
운용사 선정	한국벤처투자(주)	'20.4월
펀드 결성	펀드 운용사	'20.7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1649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1팀	02-2156-2013

13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을 위하여 총액목표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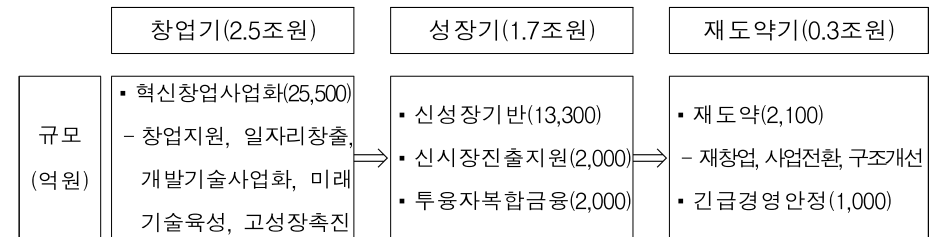
사업규모 : '20년 60,000백만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3.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책 우대금리 △0.1%p 차감 적용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1

14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모델을 창출

사업규모 : '20년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사업내용

용자지원

- (지원규모) 직접대출 150억원 지원
-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용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 용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용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10억원	2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대출 접수·심사·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월 ~ (자금소진시까지)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125

1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 사업규모 : '20년 45,000백만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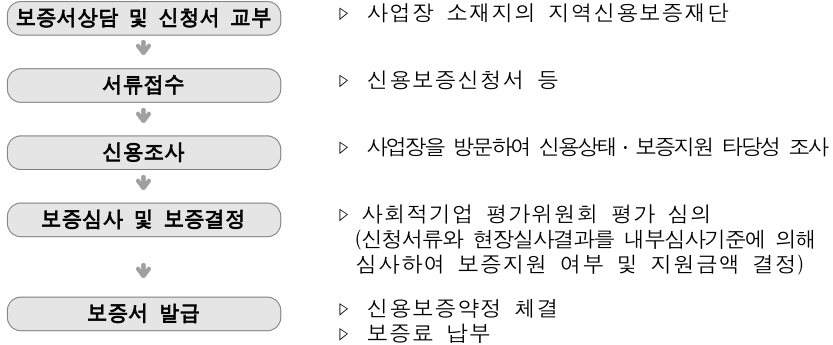
3.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대보증 지원

-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재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60%
 - (보증료율/재보증료율) 연 0.5% 고정
- (추진체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신청 후 지역신보 자체 평가로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60% 재보증 지원)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9

16 예비창업패키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 단계를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규모 : '20년 111,400백만원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참여 연령제한 없음

3.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당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이용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멘토링)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운영
- (후속지원)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규모 : 1,700개* 내외

* 일반분야 : 1,100개 / 특화분야 : 600개(4차산업 375, 소셜 100, 여성 100, 관광 25)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일반) '20.1월 / (특화) '20.3월
예비창업자 평가·선정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일반) '20.3월 / (특화) '20.4월
사업화 수행	예비창업자	(일반) '20.4월 ~ 11월 (특화) '20.5월 ~ 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14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042-480-4487

17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역량 제고 및 예술계 자생력 강화

사업규모 : '20년 3,326백만원

2. 지원대상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3. 사업내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

- (대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 경진대회
- (규모) 총 20~30개 단체 내외
 - *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지원과 연계

창업 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 컨설팅 지원(수시/맞춤형 컨설팅)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전반 지원(컴퍼니빌딩)
 -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10개 우수기업
 - (규모) 예비 기업별 최대 15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인큐베이팅) 지원
 - (대상) 초기 창업 기업(3년 미만)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규모) 12개 기업,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성장·성숙기 기업 사업도약(엑셀러레이팅) 지원
 - (대상) 성장·성숙기 기업 대상 데스벨리(Death Valley) 극복 지원
 - (규모) 10개 기업, 최대 80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기업 및 투자기관 매칭 지원
 - 기업 협력사업 제안서 피칭 10개 기업 내외, 1:1 비즈니스 미팅 60건 내외
 - 컴퍼니빌딩,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배출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IR 컨설팅, 투자기관 매칭 주선 및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개최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 아이디어 공모·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20.2월~4월
창업 지원 선발·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5월~12월
경영 컨설팅	예술경영지원센터	상시 제공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지원 공모·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월~12월
성장·성숙기기업 사업도약 지원 공모·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월~12월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월초
지원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2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회가치창출팀	02-708-222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사업규모 : '20년 5,327백만원

2.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등

3.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연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규모 : 30여개 기관 (프로그램별 25~6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공모·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월~4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단체	'20.4월~11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	02-6209-5990

19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각예술 소외지역 유희 공간 및 기존 전시시설의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 도모

사업규모 : '20년 700백만원

2. 지원대상

유형	지원대상
신규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보유 * 운영 중인 유희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지속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2~3년차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전시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4년차 이상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 ▪ 전시실을 보유·운영 중인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 해당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 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

3. 사업내용

- 생활권 내 등록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절실한 지역 내 유희 공공 생활문화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규모 (약 11개소)

- 신규조성지원(2개소 내외) 120백만원 / 지속운영지원(4개소 내외) 200백만원 / 전시활성화지원(5개소 내외) 20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 공모 및 접수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20.2월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20.4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20.4월 ~ 12월
실적 및 정산 보고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21.3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3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2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규모 : '20년 200백만원

2. 지원대상

 전국 작은도서관 70개관

3. 사업내용

 도서관 특성을 살린 '문화가 있는 날 브랜드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독후 토론, 인형극, 그림자극, 그림책 업사이클링 등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참여 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전문가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관계 고취로 참여도와 효율성 증대 지원규모 : 1개관 당 평균 2.86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주체	일정
기본계획 수립, 주관단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20.1월
주관단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1월
시행도서관 모집,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강사 발굴, 홍보물 제작 배포	사업주관단체	'20.2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진행	사업주관단체	'20.4월 ~ 11월
현장 점검	사업주관단체	'20.4월 ~ 11월
결과보고서 제작	사업주관단체	'20.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30

21 스포츠클럽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이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 사업규모 : '20년 22,35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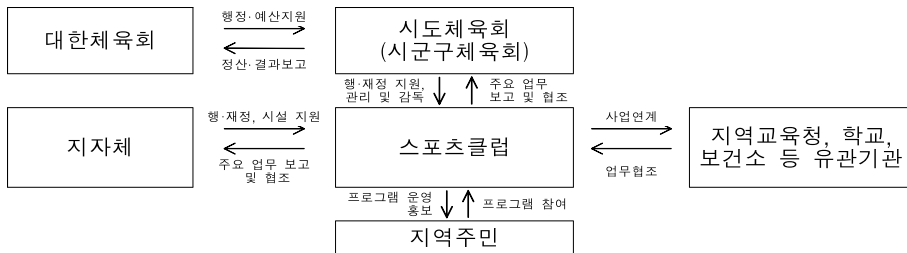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기존 98개 공공 스포츠클럽 및 '20년 74개 신규선정 예정 클럽

3. 사업내용

□ 체육시설 중심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종합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설치·운영 지원

< 사업 추진 체계도 >



○ 2020년 신규 스포츠클럽 공모

- (선정규모) 총 74개소(대도시형 7개소, 중소도시형 4개소, 학교연계형 63개소)
- 1차('19.12월 ~ '20.2월), 2차('20.2월 ~ 3월) 공모 추진

□ 지원규모

- (지원내역)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비용, 스포츠클럽운영에 필요한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액	인구수	운영가능종목	체육시설
대도시형	9억, 5년 지원	20만 이상	5종목 이상	상시운영 가능한 체육시설 1개 이상 위탁·소유 형태 확보
중소도시형	6억, 5년 지원	20만 미만	3종목 이상	
학교연계형	4억, 5년 지원	-	1종목	

- (운영) 비영리법인 설립 →登記 → 지원금 교부 → 정산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신규스포츠클럽공모	대한체육회 → 시·군·구 지자체	'19.12월 ~ 3월
예산교부 및 지침 통보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20.2월
클럽관계자 교육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연중
컨설팅 및 성과평가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연중
평가회	대한체육회	'20.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대한체육회 → 문체부	'20.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3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부	02-2144-8220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 확립

*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규모 : ‘20년 9,996백만원

2. 지원대상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광분야 사업체,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3. 사업내용

관광두레 PD

- (역할) 담당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전담, 지역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시행, 관광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원 등 주민사업체 현장 밀착 지원

- (지원내용) 월 240만원 내외 활동비 지급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기본 3년 지원. 단,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당지역에서 활동가능한 자,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단, 관광두레 유사사업 경력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해당지역 거주자 우대

- (선발방식 및 시기) 매년 12월 공고 후 차년도 3월 최종 선발

공고/설명회, 신청서 접수 12월~2월	서류평가 2월(7일간)	인적성검사 2월(2일간)	면접평가 3월(2일간)	최종선발 (3월)
문체부, 문광연, 지자체 누리집 게시, 설명회 개최	평가위원회, 2배수 내외 선정	온라인검사	평가위원회, 워크숍 형태	심의위원회

* 선발 일정은 사전공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주민사업체

- (역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

- (지원내용) 주민사업체가 창업 및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PD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

- 법무 상담,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시제품 출시, 모객 및 판로 지원 등

* 기본 3년 지원 (단,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구분	목표	지원사항
1차년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및 멘토링 • 예비오피스두레 선정 및 사업비 지원
2차년도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영개선 파일럿 사업 운영 •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3차년도	안정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운영 전략 컨설팅 • 관광두레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홍보·마케팅 강화

* 언론홍보, 청년 서포터즈 운영, ICT플랫폼 등재, 클라우드펀딩 등

- (지원조건) 선발 지역 주민공동체 및 사업체, 사업분야는 관광사업 분야로 한정,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 (선발방식 및 시기) 관광두레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6월 공고 후 8월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6월~7월(30일))	지역PD 미팅 등 사업안내 (6월)	서류 및 현장평가 (7~8월)	선정 (8월중)
--------------------------------	---------------------------	------------------------	-------------

* 선발 일정은 사전공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기간외에는 수시모집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관광두레 신규 지역 및 PD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12월 ~ '20.3월
관광두레PD 육성 교육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선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6월 ~ 8월
관광두레PD 및 주민사업체 육성,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7월 ~ 11월
관광두레 성과 평가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월 ~ '21.2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	02-2669-8466

23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 舊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R&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에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업규모 : '20년 6,058백만원

2. 지원대상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기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구분	지원사항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유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

제조·유통(8)	식품제조(7)	에너지(3)	IT문화(10)	사회서비스(5)
①충북(농촌친화바이오)	⑨대구(식품클러스터)		⑲부산(도시재생)	
②충남(스마트유통)	⑩세종(스마트푸드)		⑳울산(공예품)	
③전남(천연화장품소재)	⑪충남(전통웰빙식품)	⑬전남(태양광보급)	㉑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㉒대전(커뮤니티케어)
④경북(로컬바이오소재)	⑫전남(친환경식품)	⑭울산(그린산업)	㉒대전(지역화폐)	㉓광주(웰니스)
⑤경남(친환경소재)	⑬제주(로컬푸드)	⑮충북(재생에너지관리)	㉓강원(스마트관광)	㉔경북(로컬사회서비스)
⑥대구(친환경클리닝)	⑭광주(유기농발효식품)		㉔경남(공정여행)	㉕경남(도시청결)
⑦부산(유통밸류체인)	⑮전북(바이오푸드)		㉕광주(문화콘텐츠)	㉖제주(로컬브랜드)
⑧제주(스마트물류유통)			㉖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㉗부산(지역문화관광)	
			㉘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현장점목을 지원

< 14개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지역	품목명	지역	품목명
부산	도시재생	충북	농촌친화바이오, 태양광유지보수
대구	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 자원재활용	충남	유통판매, 산림에너지, 한류슈퍼푸드
광주	웰니스	전북	IT문화
대전	의료, 지역화폐	전남	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 전통발효식품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섬유, 돌봄, 친환경소재
세종	IT문화, 도시청결, 스마트푸드	경남	IT수산시장, 식품안전체계
강원	로컬푸드, 강원통합돌봄	제주	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1차: '20.4월~'20.12월, 2차: '21.1월~'21.12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구분	지원유형	국비지원 규모*
R&D	유형1: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유형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유형3: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 조정가능

4. 추진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공고	1월 29일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② 온라인 접수	•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3월 16일	신청기관 → 시스템
③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3월 17일	신청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④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3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⑤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미정	지역사업평가단
⑥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4월 초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⑦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4월 초	평가단 → 신청기관
⑧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4월 중	신청기관 ↔ 평가단
⑨ 결과확정 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4월 말	산업부(KIAT) → 평가단 → 신청기관
⑩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4월 말	신청기관 → 평가단
⑪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월 말	평가단 ↔ 수행기관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5

24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 舊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BIR&DI)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업화(디자인·판로 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업규모 : '20년 5,850백만원

2. 지원대상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기관	지역(광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기업·중견기업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3. 사업내용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델 발굴 지원

구분	지원사항	
유형1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특허·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예시)	
	구분	기술 지원
	목적	개발상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유형2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으로 新 BM 창출 ▪異업종 및 가치사슬별 협업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예시1) 연대조직간 협업 * 외식업체(사회적기업)↔식자재물류(협동조합)↔농식품가공(마을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형 비즈니스 지원 (예시2) 업종간 협업 * '가죽 생산SE + 수제화 생산SE + 디자인 SE'의 연결	
	구분	사업화지원
	세부 프로그램	개발된 상품·서비스의 시장 창출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

제조·유통(8)	식품제조(7)	에너지(3)	IT문화(10)	사회서비스(5)
①충북(농촌친화바이오) ②충남(스마트유통) ③전남(천연화장품소재) ④경북(로컬바이오소재) ⑤경남(친환경소재) ⑥대구(친환경클리닝) ⑦부산(유통밸류체인) ⑧제주(스마트물류유통)	⑨대구(식품클러스터) ⑩세종(스마트푸드) ⑪충남(전통웰빙식품) ⑫전남(친환경식품) ⑬제주(로컬푸드) ⑭광주(유기농발효식품) ⑮전북(바이오푸드)	⑯전남(태양광보급) ⑰울산(그린산업) ⑱충북(재생에너지관리)	⑲부산(도시재생) ⑳울산(공예품) ㉑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㉒대전(지역화폐) ㉓강원(스마트관광) ㉔경남(공정여행) ㉕광주(문화콘텐츠) ㉖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㉗부산(지역문화관광) ㉘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㉙대전(커뮤니케어) ㉚광주(웰니스) ㉛경북(로컬사회서비스) ㉜경남(도시청결) ㉝제주(로컬브랜드)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현장 접목을 지원

<14개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지역	품목명	지역	품목명
부산	도시재생	충북	농촌친화바이오, 태양광유지보수
대구	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 자원재활용	충남	유통판매, 산림에너지, 한류슈퍼푸드
광주	웰니스	전북	IT문화
대전	의료, 지역화폐	전남	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 전통발효식품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섬유, 돌봄, 친환경소재
세종	IT문화, 도시청결, 스마트푸드	경남	IT수산시장, 식품안전체계
강원	로컬푸드, 강원통합돌봄	제주	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1차: '20.4월~'20.12월, 2차: '21.1월~'21.12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구분	지원유형	국비지원 규모*
비R&D	유형1: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3.5억 내외
	유형2: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 新BM창출	
성장플랫폼	사회적경제 혁신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운영	3억원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추진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공고	1월 29일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② 온라인 접수	•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3월 16일	신청기관 → 시스템
↓			
③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3월 17일	신청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			
④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3월중	지역사업평가단
↓			
⑤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미정	지역사업평가단
↓			
⑥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4월초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⑦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4월초	평가단 → 신청기관
⑧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4월중	신청기관 ↔ 평가단
⑨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4월말	산업부(KIAT) → 평가단 → 신청기관
⑩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4월말	신청기관 → 평가단
⑪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월말	평가단 ↔ 수행기관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5

2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사업규모 : '20년 3개 혁신타운(타운당 9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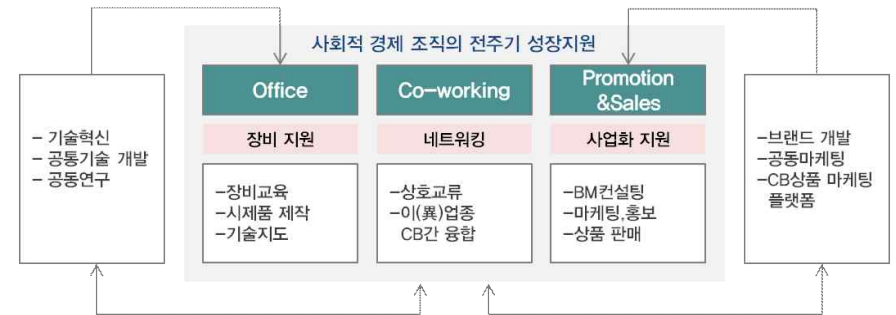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광역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제외)

3. 사업내용

□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건축, 연구장비 구축 등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비 50%이상), 설계비, 건축비(부지제외),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 등 지원



- 사업기간 : 총 3년
- 지원규모 : 타운당 국비 140억원 이내 (3개 타운)
 - 총 280억원 이내(국비:지방비= 5:5, 국비 140억원, 지방비 140억원, 부지비 제외)
 - * 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배정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이면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건축(시설)사업자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계약 체결

4. 추진일정

사업 공고 (~'20.2월)	(1)사업 공고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 제출	(2)후보사업 신청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신규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리기관)
↓		
사전 검토 ('20.4월)	(3)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산업부·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 지자체 대상 입적지에 대한 현장실사
↓		
평가 ('20.4월)	(4)소위원회 개최 (산업부·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질의·응답 - 사전검토 → 지자체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검토 의견서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 구성
↓		
심의 ('20.4월)	(5)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규모 결정 - 정부 및 민간심의위원 12명 내외
↓		
결과 ('20.4월)	(6)보조사업자 확정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지자체) 확정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
↓		
결과 보고	(7)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 산업부) - 필요시 중간점검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결과 심의	(8)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산업부·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한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점검 ▪ (심의위원회)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 확정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4

26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

□ 사업규모 : '20년 3,190백만원

2. 지원대상

- 창업 2년차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디자인기업 등

3.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사전 진단

- 통합 워크숍 방식(Social Design Day)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서비스·BM 진단

□ 사회적기업 디자인컨설팅

-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그룹 구성, 소비자리서치,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서비스 개선 등 집중 컨설팅 지원
- * (기업선정) Social Design Day를 통해 집중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대상 서면·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

□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

- 혁신적·사회적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검증, 실물 제작, 상품화,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 (기업선정) 사회적 BM을 사업화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소셜비즈니스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사회적기업 인력지원

-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지원인력 급여의 80% 이하, 6개월 내외 지원)
- * (기업선정)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서면·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
- ** (디자이너 선정) 디자인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기업 자율 매칭

□ 지원규모 : 최대 60개사

- * 사회적기업 사전 진단(60개사), 사회적기업 집중 컨설팅(15개사),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20개사), 사회적기업 인력지원(12개사 이내)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원기업 및 디자인인력 모집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20.2월~3월
·지원기업 및 디자인인력 선정 ·기업 사전 진단 워크숍 개최 ·디자인인력 채용 설명회 개최	한국디자인진흥원	'20.4월~5월
·집중 컨설팅 운영	한국디자인진흥원	'20.6월~11월
·사회적 BM 개발	지원기업	'20.6월~11월
·인건비 지원 및 교육	한국디자인진흥원	'20.6월~11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3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031-780-2035

27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확대 등 글로벌화 지원

□ 사업규모 : '20년 900백만원

2.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3.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제고(수출기업 육성)

- (아트콜라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예술가 작품을 접목하여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비즈니스 토탈 멘토링) 뷰티·식품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참여 우대) KOTRA 서비스 수수료 할인 및 무료참가, 사업참여 우대·가점 부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제도' 운영
- (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출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대상	프로그램
역량강화 패키지	내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KOTRA 및 기업별 글로벌 역량강단 ▪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사회적기업 처음 수출학교 ▪ 아트콜라보(전문 예술인 매칭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수출첫걸음 패키지	내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글로벌 CSR 사업 ▪ 외국어 카탈로그(e-브로슈어) 제작 및 Buy Korea 활용 지원
수출확대 패키지	수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활용(아마존 등) 교육 및 입점 판매 ▪ 해외시장조사, 세일즈 출장지원
수출심화 패키지	수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시회,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출대전(4월), 서울식품전(5월), 소비재수출대전(6월) 등 ▪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한류박람회(6월), 말레이시아 한류박람회(11월), 모스크바 한국우수상품전(9월) 등

□ 소셜벤처 글로벌화 지원

- (투자유치) 해외 임팩트 투자가 대상 소셜벤처 기업 피칭 및 투자 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 소셜벤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팝업스토어·전시회 참가 등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소셜벤처 글로벌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적가치실	02-3460-3492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규모 : 비예산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 * '19년말 기준 자활기업 1,136개소(재인정 유예로 '20.3월 통계 보완 예정)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자의 근로일수가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등
- 창업실무 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3. 사업내용

창업 자금, 사업자금 용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자활기업 지원 일람표】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
사업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 5년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업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기업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 100%, 2년~5년 : 50% 	자활근로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3개월 : 100%, 이후 3개월 : 50%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조건 :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자활기업
국·공유지 우선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 임대 지원 	
사업우선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지자체 간접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 지원규모

- 국비 지원은 없으며, 시도·시군구 '19년도 자활기금 지원총액은 36,670,117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총액	전국평균 (17개시도)	비고
자활기업	4,855,980	285,646	-
자활근로사업단	14,668,715	862,866	지역자활센터 포함
자산형성지원사업	114,150	112,312	-
저소득층 지원	1,909,310	112,312	-
기타	15,121,962	889,527	생활안정기금 등
합계	36,670,117	2,157,066	-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자활기업 지정	지자체	연중
우수자활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 1회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307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지원사업부	02-3415-6930, 6932

29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컨소시엄) 확대 → 자원공유를 통한 규모화
-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 주민 스스로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

□ 사업규모

- '20년 시범사업 지역 : 12~16개 지자체(국비, 770백만원)

- ①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 10개 지자체
-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 6개소(2~6개 지자체)

*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3. 사업내용

- (사업내용)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모델 유형을 선택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및 주민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신규 조직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실시

□ 지원규모 : 7.7억원(국비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

-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시범사업(10개 시군구) : 350백만원*
 - * 지자체별 예산액 : 50백만원(국고보조율 70% / 국비 3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6개소) : 420백만원*
 - * 개소별 예산액 : 100백만원(국고보조율 70% / 국비 7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 2020년 시범사업 모델 유형 >

유형	내 용 (예시)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 (컨소시엄) 시범사업	<p>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통합돌봄(퇴원지원, 주거지원, 요양·돌봄), 2)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3) 기타(정신질환자 지역정착, 노숙인 자립 등) 지역내 사회적경제 컨소시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p>② 아동돌봄 사업 연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돌봄 사업의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등 서비스 제공 <p>③ 새로운 서비스 제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각지대 및 틈새 신규 서비스(청·중·장년 1인가구 등 서비스 제공 사각 지대,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이 어려웠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신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및 틈새(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제공자 중심의 번들 서비스(지원금 매칭)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p> <p>(예시) 저염식 식단이 필요한 암환자,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노인세대, 최중증장애로 기존 책정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추가 서비스</p> <p>** 틈새 서비스 : 각종 정부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역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 지역내 세대·계층 통합,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등 소셜 믹스(social mix)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대상자간 서로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노력

유형	내 용 (예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을 구성으로 공공 돌봄사업 틈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구성) 근거리 생활지역 내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 구성*을 통한 돌봄 수요 대응 및 지역내 유휴 인력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수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조합형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 서비스) 보육,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사업의 틈새 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이동, 공간, 프로그램)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시범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20.1월~2월
사업 시행	지자체	'20.3월~
교육·컨설팅 추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3월~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20.11월~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043-710-9031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삶의 질 제고, 돌봄경제 육성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년 예산
1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000
2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951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3,417
4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33,059

* 각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의 전체 액수로서, 사업비 전체가 사회적경제 연계 자조모임 활성화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님

**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는 사업개발비 지원(2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3번),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15번), 작은영화관 건립(17번), 스포츠클럽 육성(20번),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38번) 등 유관사업이 포함

2.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만 18세~64세) 발달장애인 4,000명(20)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지원제외)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이용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만 12세~17세) 발달장애인

- (선발기준)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 학생으로 하되 신청대상이 지원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관리 및 순차적 지원 연계

- (지원제외)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온종일교실(이상 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이상 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프로그램 등 유사 복지사업 이용자

3.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 고용(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수의 약 15% 이상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작업시설, 편의시설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 최대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지원)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 1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판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의무 부과(0.6%)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가를 모집하여 참여자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본운영비(1인당 48만원), 취업연계수당(1인당 20만원) 지원

* 자치단체 위임(보조율 50%), '20년 12개 지자체 선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기본형 기준) 제공

○ 제공시간은 지원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가지 유형 중 매칭

구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주간활동	100시간	56시간	132시간
활동지원	△40시간	-	△72시간
총급여량	+60시간	+56시간	+60시간

※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

○ 일일 2시간 기준, 월-금(13시~19시), 토(09시~18시) 운영(일요일/공휴일제외)

□ **지원규모**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 및 설립지원금 300백만원* × 10개소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잔여 지원금은 차년도에 추가 지급 가능, 창업비용과 설립·운영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10억원 내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참여자 1인당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서비스 연계 성공 시 연계수당 1인당 20만원 및 참여자 수당 1회당 3천원(최대10회)을 수행기관에 지원

- 중증장애인 10,000명에 대해 동료지원 활동 제공 및 취업서비스 연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만 18세~64세) 발달장애인 4,000명

* 연도별 확대계획: ('20) 4천명 → ('21) 9천명 → ('22) 17천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만 12세~ 17세) 발달장애인 7,000명

* 연도별 확대계획: ('20) 7천명 → ('21) 15천명 → ('22) 22천명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3월~5월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본부, 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	'20.1월~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사회보장정보원	'20.2월
맞춤형 급여체계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복지부, 장애인개발원	'20.3월~12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시·군·구 확대 추진	복지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하반기
주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2월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 시행	복지부, 지자체,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3월~4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복지부	'20.6월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지원부, 고용환경부	031-728-7155, 706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	02-3433-450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대상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마련

*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수요자가 살던 곳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 사업규모 : '20년 17,764백만원

2. 지원대상

□ 16개 선도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9년 16개 지자체 선정

- (노인) 경기 부천시·남양주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광주 서구,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진구,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3. 사업내용

□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등 운영

- (케어안내창구) 돌봄 수요자에 대한 기초욕구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민원) 접수·대행 등 실시(읍면동 등)
- (지역케어회의)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욕구대상자에 대한 종합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시군구 단위 운영)

□ (대상자별 서비스)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욕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추진

- 지역 자율적으로 대상자군을 설정,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재원, 연계사업 및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고 사회적기업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돌봄 및 건강관리 제공 등

□ 지원규모 : '20년은 16개 지자체 선도사업 지속 추진

- 선도사업 재원('20, 국비 178억원 지원), 연계사업 및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4.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044-202-3693, 3695		
□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	062-360-4951
경기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9010
충남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3434
전북 전주시	통합돌봄과	063-281-2831
경남 김해시	시민복지과	055-330-4682
부산 북구	희망복지과	051-605-4783
부산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309-5113
경기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416
경기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031-590-8663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4323
충남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941
전남 순천시	통합돌봄과	061-749-4220
제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851
□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		
제주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3041
대구 남구	행복정책과	053-664-2607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		
경기 화성시	보건행정과	031-5189-62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사업규모 : '20년 1,050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中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 지원대상

- 17개 시·도교육청(교육청을 통해 개별학교 지원)

3. 사업내용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별 활성화 지원

- (중앙지원센터 운영) 협의회·컨설팅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콘텐츠·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한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교육청별 지원센터 구축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중앙지원센터 : 200백만원
- 시·도 교육청 : 850백만원(시·도교육청별 약 5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학교협동조합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부	교육부	'20.1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월
주관교육청-국평원 간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월~3월
시·도교육청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4월~
학교협동조합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4월~7월
전국학교협동조합 연합캠프 운영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7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1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	02-3780-9952

33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 및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

사업규모 : '20년 5,2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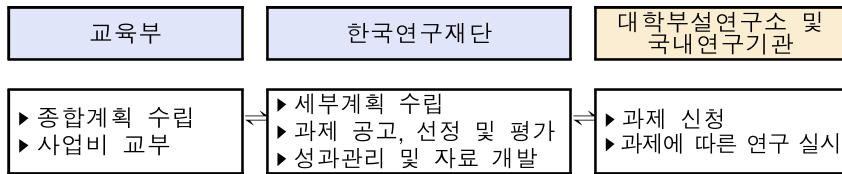
2.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 및 일반연구소

3. 사업내용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내 문제해결형(사회적경제 등) 유형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실적) '19년부터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문제해결형 분야를 신설하여 집단연구 지원 강화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18.12.31.) 및 발표 완료

지원규모 : '20년 총 5,200백만원

※ 사업 성격상 연구과제는 상향식·우수과제 선정 중심이므로 적격 연구소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소가 미지정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한국연구재단	'20.4월 ~5월
평가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20.6월 ~8월
연구 개시	신규과제 선정 연구소	'20.9월 ~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854, 687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042-869-6132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확산 및 대학 내 창업인재 발굴·육성을 통해 대학 내 적극적인 창업 붐 조성
- (사회적경제 관련)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콘텐츠 활용이 확대 되도록 적극 유도

사업규모 : '20년 622백만원

2. 지원대상

전체 대학 및 대학 내 창업팀

3. 사업내용

창업교육 거점대학* 운영을 통한 대학의 창업교육 수준제고 및 우수 창업교육 운영모델 확산

* 창업교육 및 지원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 거점(hub)으로 지정하여, 권역 내 타 대학 등에 보유한 창업교육 자원 및 전문성 공유·확산

-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교육 후발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창업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 (창업전담인력 전문가 연수) 대학 내 창업 전담인력(교·직원) 전문가 연수를 통해 대학의 실전창업 지원 역량 강화
- (교육모델 개발·확산)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및 조직운영 방식, 교육과정 및 효과적 교수법, 우수 교육콘텐츠 등 개발·보급*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changgo.or.kr)' 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을 통해 개발된 강좌 및 교육과정 보급

지원규모

- (창업교육 컨설팅) 연간 10개 대학 내외(신청)
- (창업전담 교직원 연수) 권역별 연 2회(동·하계), 각 100여명 규모
- (창업교육 거점대학) 2개 권역(중부권·남부권)별 각 1개 대학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교육 거점대학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월~3월
대학 내 창업전담 교직원 연수	창업교육 거점대학	(하계) '20.7월~8월 (동계) '21.1월~2월
대학창업교육 컨설팅		'20.10월~12월
대학 창업교육 성과확산 포럼	(권역단위) 창업교육 거점대학	(하계) '20.7월~8월 (동계) '21.1월~2월
	(전국단위) 한국연구재단	(하계) '20.8월말 (동계) '21.2월말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45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042-869-641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지역의 여건 및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지원

□ 사업규모 : '20년 1,428백만원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지원(지자체 5개 내외),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기지정 평생학습도시의 고용·복지 연계 등 지역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를 지원(지자체 10개 내외),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5개)

< 평생학습도시 사업 (예시) >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퇴직 중·장년, 장애인 등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등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 평생교육기관(대학 포함)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연수,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 공간 확충* 등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 추진

*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사회적경제 학습공간으로 지원

※ 평생학습도시 현황(누적) : ('17년) 153개 → ('18년) 160개 → ('19년) 167개

3. 지원규모

구분	신청가능 대상	지원규모	지원금 규모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평생학습도시 未지정 시·군·구	5개 내외 ('19년 7개 선정)	90백만원 내외 (지원금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既지정 시·군·구	10개 내외 ('19년 12개 선정)	50백만원 내외 (지원금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既지정 시·군·구	5개 ('20년 최초 시행)	3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20.1월
사업 신청 접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월중
본 심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선정심사위)	'20.2월말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20.3월중
착수협의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4월
컨설팅 실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4월 ~ 11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	02-3780-993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규모 : '20년 9,656백만원

2.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

3. 사업내용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 단, 2~3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하게 공모 신청 후 선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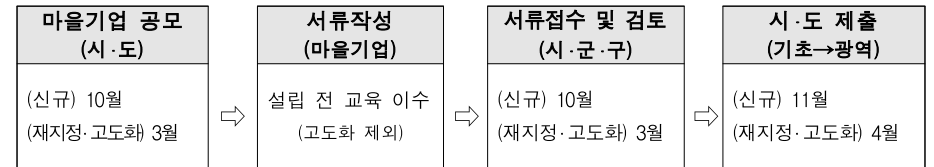
□ 자립지원

- 판로지원,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조성 추진, 온라인 박람회, 직거래장터 및 품평회 등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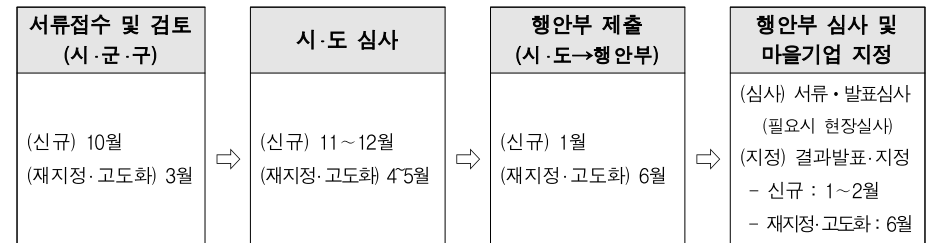
- (교육 및 컨설팅) 마을기업 역량강화 유통·마케팅 등 전문교육,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 (홍보지원) 우수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등 사례 기획기사 보도, 홍보물(영상, SNS컨텐츠) 제작·배포

4. 추진일정

○ 신청절차



○ 선정절차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5, 3437

3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 지역별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시행

□ 사업규모 : '20년 235,003백만원

2.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3.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 3대 기본유형'으로 추진 → 상향식·분권형 사업

- (지역정착지원형) 지역기업에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
 - 지역기업(마을기업 등)에 일자리 제공 +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 * 인건비(연 2,400만원) 및 기타지원금(연 300만원) 지원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 취·창업 간접비(임대료, 교육·컨설팅 등) 지원
 - * 취·창업 간접비(연 15백만원) 및 기타지원금(연 150만원) 지원
-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인건비 등 지원 → 민간 취·창업 연계
 - * 인건비(연 2,250만원 한도 내) 및 기타지원금(연 2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 '20년 약 2.7만명

- 지역정착지원형 : 1.4만명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0.5만명
- 민간취업연계형 : 0.8만명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역 밀착형 홍보	행안부, 지자체	'20.1월 ~ 2월
지자체별 참여자 모집 및 매칭 시행	지자체	~'20.3월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강화	행안부, 지자체	분기별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정책과	044-205-3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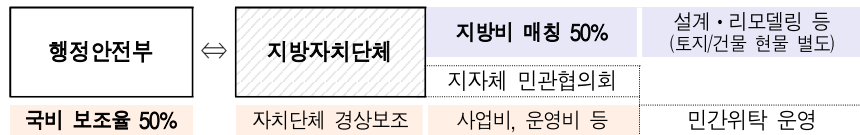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공동생산자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①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②지역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문제해결 소통협력공간 운영 지원으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규모 : '21년 신규 지자체 1개소 공모 예정

(국비보조율 50%, 개소당 연 20억원, 총 3년 간 국비 지원)



- '20년도 선정 지자체 : 충남 천안('20. 2. 14. 최종 선정)
- '18~'19년도 선정 지자체 :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광역, 광역+기초, 기초)

3. 사업내용

□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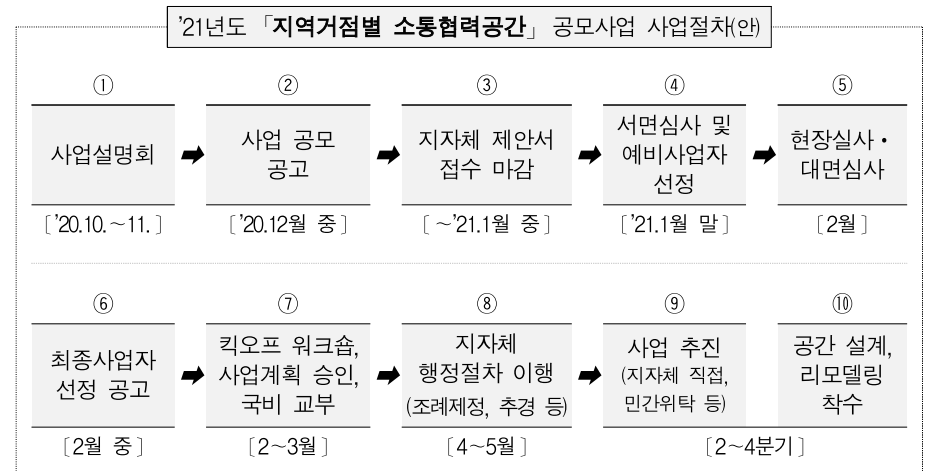
- 주민참여 공간기획,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 지자체 소유건물(건물 신축·부동산 신규 매입 제외)
 - 조성 유형 : 단일건물형, 구역형, 연결망형 중 선택*
- * 3가지 유형 모두, 거점건물의 경우 최소 연면적 1,700㎡(500평) 이상 확보

□ 주민 주도 지역문제해결 지역혁신활동 지원(국비 50%)

-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입주, 다목적공간 대관 등), 지역밀착 생활 실험 지원(리빙랩 등), 저변확대(홍보, 컨퍼런스 등) 및 거버넌스 구축, 혁신사례 연구 및 아카이브 등
 - (사무공간 입주) 사회적경제기업, NPO(비영리스타트업 등),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혁신 관련 유관단체
 - (공용공간 대관) 회의실, 컨퍼런스홀, 다목적실 등 대관
 - (공모사업 참여) 지역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공모 등

4. 추진일정

○ 선정절차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205-340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유휴공간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도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자산화 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 사업규모 :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1건당 5억원 한도 내 금융지원

2. 지원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에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사업내용

□ 유휴공간 매입비용 금융지원

-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 - 농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지원조건 : 용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사업자부담 25%, 자자체 이차보전 1%), 보증료율 0.5% (사업자 부담) ※ 사업자 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4. 추진일정 ※ 접수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신청접수	행안부 및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20.3.5~3.31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20.4~5월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20.4~5월
사업자 선정 및 통보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행안부가 통보	'20.6월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발급), 농협은행(대출 지원)	'20.6~7월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205-3417, 34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19년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을 확대·개편)

□ 사업규모 : '20년 700백만원

2. 지원대상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도시재생경제주체 등

3. 사업내용

-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구상
- (지원유형) 1단계는 컨설팅을 통해 역량강화와 실행 준비에 집중, 2단계에서는 우수팀이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유형)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①사업·창업 분야(발굴/계획수립/시행)와 ②공동체육성 분야(협동조합 구성 등)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 (지원규모) 단계별로 3개월간 20백만원을 지원하되, 1단계에서는 20팀을 지원하고 2단계에서는 우수팀 10팀만 선정하여 연계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20년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19.3월
사업화 지원 공고 선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19.4월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044-201-4918

41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육성·설립 지원

□ 사업규모 : 총 9.5억 규모 예상(1개 조합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대상) 총 19개 협동조합(설립완료: 5개, 설립추진 중: 14개)

2. 지원대상

□ 도시재생 뉴딜지역 내에서 설립인가 받은 모든 마을관리 협동조합

3. 사업내용

□ (주요내용)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진행 및 조합설립 인가

- (역량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및 운영 등 '기초교육' 연 2회,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대상 '전문교육' 연 2회 시행

- (설립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인가

* (주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추진현황) 5개 조합 설립인가* 완료, 14개 지역 설립절차** 착수

* 설립인가 : 총 5개소(인천 만부, 제주 신산머루, 충주 지현, 공주 옥룡, 목포 만호)

** 절차 : 발기인모집 → 정관작성 → 동의자모집 → 사업계획 수립 → 창립총회 → 인가신청

□ 지원규모 : 조합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을 포함할 경우,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
- (집행실적) 인천만부 협동조합 3천만원 집행, 2천만원 추가집행 예정

【 인천만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운영 사례 】

- (사업대상) 인천 남동구 만수무강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17년 선정)
- (설립경과) 교육 및 컨설팅('18.09~) →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민관TF운영('18.09~) → 설립인가('19.04) → 운영지원전문기관 협약('19.06) → 초기사업비('19.09)
- (조합구성) 주민협의체 중심 발기인 5명, 출자금 200만원으로 마을조합 설립
- (주요사업)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마을관리소(주차장, 사회적주택 관리사업 등)
 - 마을밥상 :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1회 마을밥상 시범운영, 고객선호 메뉴개발 중
 - 마을문화상점 : 지역텃밭 활용한 야생화 등을 재배하여 꽃차, 천연염색 등 추진, 천연염색과 관련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근 장애인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 마을관리소 :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① 국공유지 나대지 관리 및 제초 작업 수행, ②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 인천만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발표자료 사진 발췌

4.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수요조사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4월
지속지원 및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044-201-49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팀	031-697-77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 사업규모 : 비예산

2. 지원대상

□ 사회주택의 공공성 기준*을 확보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 * (임대료) 시세 대비 85% 기준 낮을수록, (인상률) 연 5% 이내 기준 낮을수록, (임대기간) 15년 기준 장기일수록 높은점수 배정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3. 사업내용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공모를 통해 토지임대부(건설형)*, 토지임대부(리츠형)**, 매입 임대주택 운영위탁*** 방식 등 연간 500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건설형) : 사회적경제주체가 LH 용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시세의 85% 이하로 15년 임대 후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토지임대부(리츠형) :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면 사회적경제주체가 이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시세의 85%이하로 15년 임대 완료 후 사회적경제주체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

*** 매입임대 운영위탁 : LH 또는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사회적경제주체)을 선정하여 운영기관이 사회주택으로 재임대·운영

□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용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기금용자) 호당 최대 1억원까지 최저 2.0%의 금리로 최대 30년간 용자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다가구)
	45㎡이하	45㎡~60㎡	60㎡~85㎡	
용자한도	최대 0.5억원	최대 0.8억원	최대 1억원	가구당 0.6억(호당 5억원내)
용자금리(변동)	연 2.0%	연 2.3%	연 2.8%	연 2.0%

* 8년 이상 임대시 8년 이후부터 연 0.1%p 금리 인하(1% 범위 내)

- (PF보증) 총사업비의 70% 내(지자체 등 매입확약 시 90% 내)에 대해 연 0.220~0.668%(매입확약시 0.1%)의 낮은 보증료율로 대출보증 지원*

*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시공순위 500위 내 또는 최근 5년간 30세대 이상) 요건

□ 토지확보 지원

- LH 공모사업의 경우, LH 보유토지를 사업자에게 연 2%의 저리로 15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토지임대료는 1년간 납부유예 및 분할상환(5년 내) 허용

□ 교육 및 컨설팅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택사업 및 채용조달 관련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및 사업성 분석·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주택 공모 및 토지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중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연중
교육 및 컨설팅	주택도시보증공사	'20.하반기

5. 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087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02-3771-6292

43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사업규모 : '20년 1,26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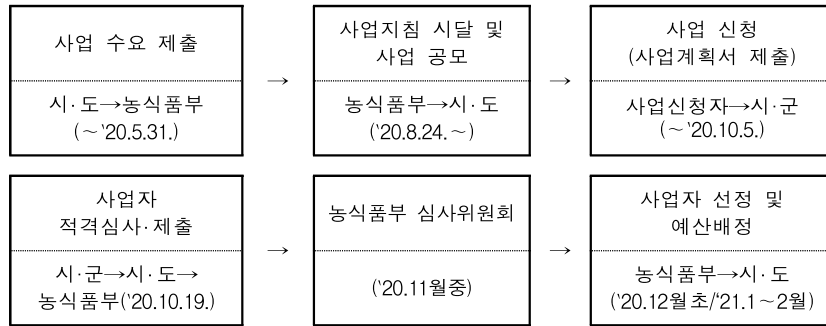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최대 5년)
-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발달장애아동,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 가정,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 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지원규모

- 사회적 농장 개소당 연간 60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4. 추진일정`21년도 사업자



* '21년도 사업량(선정조직 수)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2, 1573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031-8084-9564

44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 특히, 농촌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구축

□ 사업규모 : '20년 73,500백만원

* '18~'20년 조성된 60개소 대상

2. 지원대상

□ 123개 농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개소 현황 및 계획 : ('18) 10개소 → ('19) 20개소 → ('20) 30개소 → ('21) 20개소 → ('22) 20개소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R&D 등) 및 상품화, 가공 시설·장비 개선, 로컬푸드 및 사회적농업 육성,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지원
- 신활력 추진단 구성원 중 상근직원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시군)에서 별도 예산 확보 후 채용(신활력 사업비에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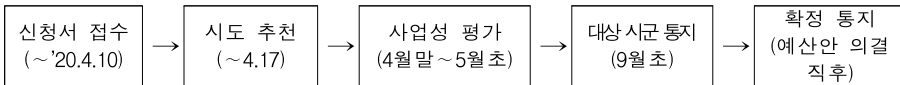
- (사업특징) 현장 기반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주도 사업 추진체계 정립
 -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민간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플랫폼 기능도 수행
 -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계획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등을 안정적 지원
 - 전문적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계획지원단 운영

□ 지원규모

- 사업지구(시군) 별로 4년 동안 70억원 지원(국비 49, 지방비 21)
 - * 연차별 지원비율 : 1년차 20%, 2~3년차 30%, 4년차 20%
 - **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중 30%는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활용

4. 추진일정(21년도 선정지구)

-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잠정)하고, 추진단 중심으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담당자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으로 제출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1555

45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축제)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
- (농촌유학)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 (농촌교육문화복지)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

□ 사업규모 : '20년 4,037백만원

2. 지원대상

- (농촌축제) 마을·권역단위 축제 67개소
- (농촌유학) 법인격이 있고 6개월 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 26개소
- (농촌교육문화복지) 마을주민 공동체 190개소

3. 사업내용

- (농촌축제) 농촌축제 개최에 필요한 기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등 축제 개최 비용 지원
 - 시·군 단위의 관광성 축제가 아닌, 주민 중심의 축제 개최
- (농촌유학)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 센터 운영비, 보험 가입비 등 지원

-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며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등 농촌 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

□ (농촌교육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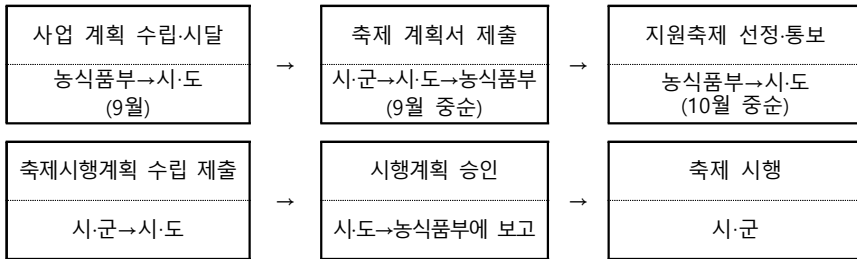
- 10~15명 이상의 주민 공동체가 복지관·여성농업인센터 등과 협력하여 음악교실, 인문학교실, 치매예방 교실 등 운영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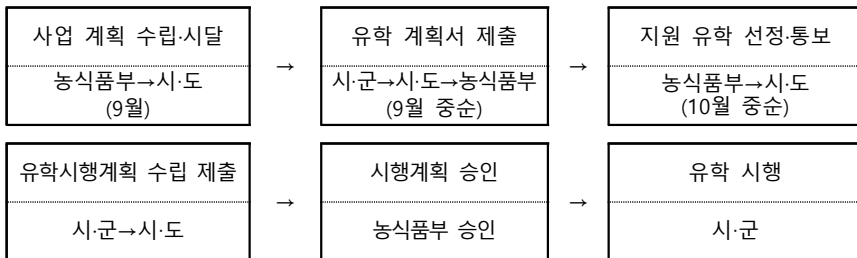
- 농촌축제 개소당 8~18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50%)
- 농촌유학센터 개소당 18~116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촌교육문화복지 개소당 5~25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100%)

4.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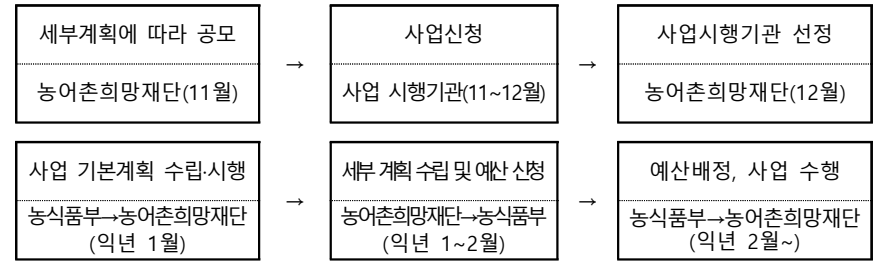
□ 농촌축제



□ 농촌유학



□ 농촌교육·문화·복지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1579
농어촌희망재단	복지팀	02-509-244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다양한 유·무형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 증가 추세
- 신규 창업자, 기존 산림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지원하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진입 촉진

□ 사업규모 : '20년 600백만원

2.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산림형 기업 등

* 산림사업법인, 산림복지전문업, 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3. 사업내용

□ '발굴' → '육성' → '성장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발굴)** 찾아가는 설명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 진입지원 교육·컨설팅
 - 기초교육, 법인 설립 지원, 기업의 소셜 미션 정립, 제도 설명 등
- **(육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제도, 신규 대표자 교육,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방법, 재정지원 제도 안내, 정기 교류행사를 통해 사업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연간 2~3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및 지정 심사

- **(성장지원)** 기업의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및 판로개발 등 자립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및 기업 CSR 활동 지원

- 맞춤형 교육 바우처 지원, 기업경영 심화 컨설팅, 기업별 제품·서비스의 적합한 판로 확대, 금융지원·인증 전환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200개 기업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예비사회적기업제도 사전 설명회	한국임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이상 ('20년 총 3회 예정)
사회적경제기업가 아카데미	한국임업진흥원	'20.3월, 5월, 8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및 심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이상 ('20년 총 3회 예정)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한국임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이상 ('20년 총 3회 예정)
산림비즈니스 역량강화 특화교육	한국임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교육바우처, 판로 지원 등	한국임업진흥원	'20.2월~11월
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연간 2회

5. 담당기관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1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02-6393-263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육성과 차별화된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
-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도모
- * 산림일자리발전소 :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일자리가 주민의 주도 하에 자생적으로 창출되도록 도와주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사업규모 : '20년 4,0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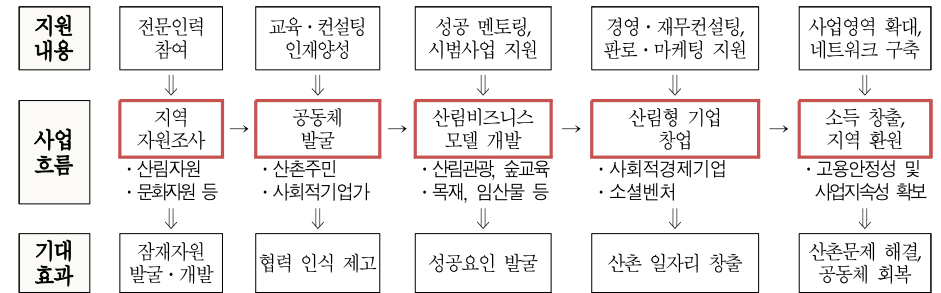
2. 지원대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3. 사업내용

-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3년간 현장 밀착지원
- 지역별로 전문(그루)매니저 각 1명씩 배치하여 지원활동을 전담
-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 발굴·육성
-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림인프라를 연결·조합하여 지역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교육, 멘토링, 과일럿 사업 등 간접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 프로세스 >



지원규모 : 45개 지역 지원

- 1개 지역(시·군·구) 당 5개 내외의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 (신규) 10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
- (기존) 35개 지역을 지원

35개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 가평· 화성 / 강원 인제· 원주· 홍천 /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청양· 홍성· 천안· 아산· 태안 / 전북 완주· 남원· 순창· 장수· 진안	
전남 곡성· 영광· 장성· 장흥· 순천 / 경북 경산· 청송· 영주	
경남 거창· 밀양· 함양· 함천· 창녕 / 울산 북구· 울주 / 지리산 숲길 / 제주 숲길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그루매니저 모집공고	산림일자리발전소	'20.2월 ~ 3월
그루매니저 선발·배치	산림일자리발전소	'20.3월 ~ 4월
지역자원조사	산림일자리발전소	'20.5월 ~ 10월
지역공동체 발굴·지원	산림일자리발전소	'20.7월 ~ 12월

5. 담당기관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042-381-513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촌의 공동화·고령화, 일자리와 소득 부족의 문제를 지역의 산림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
- 산림 신품종 생명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산촌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산림생명산업 발전

사업규모 : '20년 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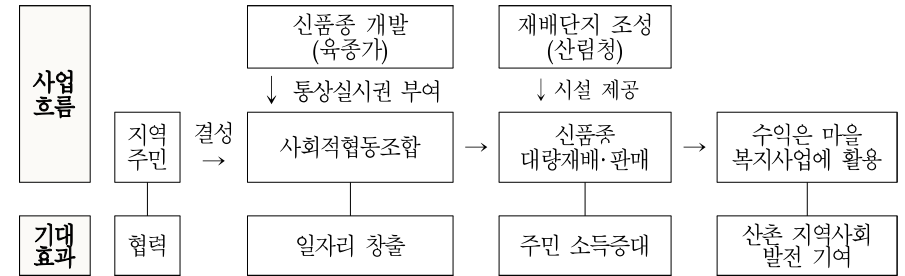
* 1개 재배단지 당 지역주민 등 50명 규모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3. 사업내용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 신품종 분야와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합

- (국가) 신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유한 신품종 특허권, 재배기술 등을 지원
 -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 신품종을 대량 생산하여 제약·화장품·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 원료로 공급
- * 산림 신품종 출원 : 감·밤·대추·야생화·산채·표고버섯·산초 등 110종 417품종

<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체계 >



지원규모 : '20년 2개 지역(전북 장수, 전남 광양)에 재배단지 조성

- 연간 2개소씩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예정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재배단지 실시설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3월~4월
재배단지 조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5월~11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4월~11월
재배단지 준공,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2월

5. 담당기관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1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20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사업내용

- (주요내용) 특화된 보증상품을 통해 운전·설비투자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
- 지원규모 : '20년 중 1,000억원 규모 보증공급 목표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연중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	02-2100-261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8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제공

2.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금융수행기관

3. 사업내용

- (주요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성과와 상환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웹 기반 평가시스템을 사회적금융수행기관에 제공
 - 활용기관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원 및 데이터 축적으로 사회적가치 기반 평가시스템 지속 보완·발전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신용보증기금	'20.2분기 이후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	02-2100-261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8

51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2.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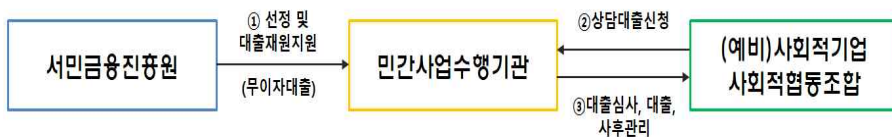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3. 사업내용

□ 사업구조

-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선정, 동 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대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
- (민간 사업수행기관) 서금원에서 차입한 자금을 채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대출)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구조 >



□ 지원규모 : '20년 중 6,000백만원

4. 담당기관(문의처)

□ (민간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서민금융진흥원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	02-2100-2613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	02-2128-8101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총 11개 기관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02-734-6506	www.peri.or.kr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joyfulunion.com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 협의회 공제사업단	070-5099-1672	www.sefund.or.kr
한국사회혁신금융(주)	070-7176-0298	ksifinance.com
(재)함께일하는재단	02-338-0019	hamkke.org
동작신용협동조합	02-822-1300	www.dongjakcu.co.kr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02-310-9508	www.merryyear.org
(재)한국사회투자	02-2278-8399	www.social-investment.kr
사단법인 피피엘	070-4610-5683	www.pplkorea.org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	jejusen.org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051-753-2501	bsen.kr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법령개정,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을 마련
-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판로확대, 전문기관 자문 등 수행
- 협동조합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규모 : '20년 6,314백만원

2. 지원대상

협동조합 종사자,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

3. 사업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실시,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상시상담 및 현장 경영 컨설팅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20년, 70팀)

- 청년, 시니어 등 협동조합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팀 창업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

- 사업구상부터 법인설립까지 전문 인큐베이터 밀착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화 및 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공공·민간 판로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발굴, 개선 등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입 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3월 ~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4월 ~ 11월
협동조합 민간·공공판로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3월 ~ 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교육 문의)	031-697-7731
	협력운영팀 (창업·판로 문의)	031-697-774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경력단절,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주체가 주도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 사업규모 : '20년 1,733백만원

2. 지원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설립 운영자

3. 사업내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 지원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전략, 마케팅기획 등 전문컨설팅 및 제품·기술 고도화를 위한 개발지원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 **(19년 성과)** 협동조합의 사업 단계 및 조합원 특성에 따른 유형별(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화 사례 도출

□ 교육·컨설팅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운영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컨설팅 실시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및 확산

- **(19년 성과)** 과학기술인 대상 설립·경영지원 교육(총676명 수혜), 상담·컨설팅(총45건) 등 협동조합의 설립 및 참여 지속 확산

□ 일거리 발굴·연계 및 성과확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성장 자생력 증대, 잠재고객 확보, 사업자금 확보 등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성장 지원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간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 「4대 권역별 협의회 운영·지원사업」 지원, 지역 내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참여
- **(19년 성과)** 모의·실전 펀딩 20개, 권역 및 중점 비즈니스별 협의회 10개 구성·운영 지원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 **(개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지역공동체 혁신형”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
 - * 출연연, 대학 등이 포함된 중견형 협동조합 설립에 우수 사업모델 발굴, 인큐베이팅, 활동자금, 일거리 매칭 등의 지원 제공

□ 지원규모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일반형(10개, 과제당 21.4백만원), 심화형(3개, 과제당 33백만원), 고경력형(4개, 과제당 21백만원)
- **(교육·컨설팅)** 설립희망자(교육·상담 50건, 건당 0.72백만원), 설립운영자(20건, 건당 4.05백만원)
- **(일거리 발굴·연계 및 성과확산)** 일거리 발굴·연계(270백만원), 홍보·성과확산(229백만원)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산·학·연 연계 협동조합 육성·지원(72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20.2월 ~ 11월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20.4월 ~ 11월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공모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20.8월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사업 협동조합 선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8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9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창업진흥팀	02-6411-106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혁신팀	042-865-8973

54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경분야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예비창업자 대상 체계적인 창업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사업규모 : '20년 150백만원

*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예산 일부 활용

2. 지원대상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3. 사업내용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관련 인증심사 원칙을 준용하여 선정
-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서 발급(지정기간 3년) 및 사후관리 실시(컨설팅 등)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고도화

-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 과정 성장 지원
-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촉진 전담 중간지원조직(마을환경매니저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운영 지원('20년 시범 실시)

* 마을환경매니저 사업 : 지역별(시·군·구) 마을환경매니저를 지정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운영을 3년간 밀착 지원 (매니저 공모 → 매니저 선발 → 창업 지원 → 운영 지원)

- **(성장)**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지원(컨설팅, 시제품 제작, 인검증, 특허기술, 홍보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판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전용 온라인몰(한국환경공단)' 확대운영, 공공구매 상담회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지원

○ 정책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 **(홍보)** 우수 사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등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역할 일반 국민들 인지도 제고

- **(간담회)**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관련 정책·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

- **(워크숍)** 권역·분야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 **자원 연계**

○ **(공공)**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환경현안 해결형, 지역 환경자원 활용형 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예시) 국립공원 산행도시락 사업, 수자원공사 강문화 활성화 사업 등

○ **(민간)** 대기업(SK, LG, DB)과 업무협약, 공모전 공동개최를 통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예시) DB손해보험 환경챌린지 2기 개최('20.3월~) 등

** (성과) LG소셜캠퍼스, DB손해보험 환경챌린지, SK이노베이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19년까지 192개소 육성지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9년 신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8개소) 및 홍보(박람회참가 3개소, 지하철동영상 송출 5개소)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20.6월
'20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사업 (마을환경매니저 시범사업,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환경부	'20.3월 ~ 12월
'20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사업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3월 ~ 12월
'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환경부	'20.4월 ~ 8월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교육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20.5월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시상	환경부	'20.11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02-2284-1744
한국폐기물협회	사회적기업팀	02-2680-7043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 모색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 ODA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청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사회적 가치 달성에 기여

 사업규모 : '20년 6,780백만원

2.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CTS 단계별 지원

SEED 1	SEED 2
기술개발사업	시범사업, 비즈니스 준비사업 등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21년 신규사업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5월~6월
사업 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9월~10월
약정 체결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1월~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사업실	031-740-0550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재생과 혁신성장 견인

 사업규모 : '20년 434,448백만원

2. 지원대상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3. 사업내용

 항·포구 및 배후 어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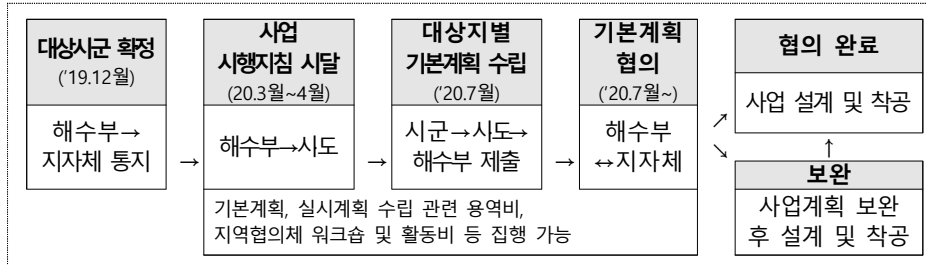
- (내용)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개발 추진
 - *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 달성
- (구성)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에 따라 항·포구 개선 등 공통사업, 지역 특화사업, SW사업* 등을 융·복합하여 추진
 - * (공통사업) 어항시설 정비, 여객 편의시설 확충 등 쏠대상지 공통 적용 (특화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마을환경 개선 등 어촌 특화개발 (SW사업) 주민 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원규모 : 19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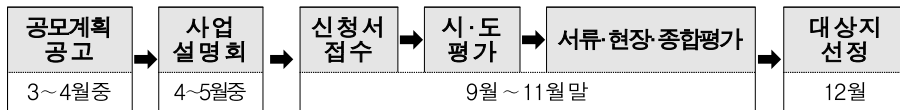
- 190개소('19년 70개소, '20년 120개소)에 대해 개소당 평균 1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3개년)

4. 추진일정

□ 대상지 사업 추진 절차



□ 공모 일정



* 위 일정은 유동적으로 추후 세부 추진일정 공고 예정

5. 담당기관(문의처)

소관부처/기관	부서	연락처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4, 6178, 6195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044-715-7234

참고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활용 관련 개선 현황

□ 물품·용역 입찰가점 확대('17.12. 완료)

- 물품·용역 적격심사기준(기재부 예규)에 가점 부여 근거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책임 항목) 가점 확대(1점 → 2점)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가점 확대(0.5점 → 1점)

□ 물품·용역 수의계약 확대(국가 '19.3. 완료/ 지방 '18.7. 완료)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국가계약법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령)

*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 (기존) 2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국유 '19.3. 완료 / 공유 '18.12. 완료)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및 매각대금 5년이내 분할 납부 허용(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18.3.)

*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용요율 인하: (기존) 재산가액 5% 이상(일반요율) → (개선) 2.5% 이상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100이내 감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